

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7]

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표(제20조제1항 관련)

구 분	생활비 비율표
부양가족이 없는 자	35퍼센트
부양가족이 있는 자	30퍼센트